

○ **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판매기업용)(e-안심팩토링대출용) 개정 대비표**

1. 주요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” 및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판매기업용)</b> (e-안심팩토링대출용)</p> <p><b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b></p> <p>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”과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</p> <p><b>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</b></p> <p>① 제7조의 <u>양도대전</u>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” 및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판매기업용)</b> (e-안심팩토링대출용)</p> <p><b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b></p> <p>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”과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</p> <p><b>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</b></p> <p>① 제7조의 <u>매출채권매입대전</u>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문구 수정</p>

2. 개정 시행일: 2016년 11월 30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: 개정된 내용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